

의안번호	2126659
의 퇴 인	소병철의원
회 답 일	2024. 5. 16.
추계번호	24C0254

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, 실태조사 실시, 정책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, 지원센터 설치·운영으로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19억 2,600만원, 2029년 113억 6,0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55억 3,700만원(연평균 111억 7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안 제6조	99	—	—	—	—	99	20
안 제7조	200	—	—	200	—	400	80
안 제8조	8	8	8	8	8	40	8
안 제17조	11,619	10,348	10,672	11,008	11,352	54,998	11,000
— 국비	9,206	7,859	8,105	8,361	8,622	42,153	8,431
— 지방비	2,413	2,489	2,566	2,647	2,730	12,845	2,569
합 계	11,926	10,356	10,680	11,216	11,360	55,537	11,107
— 국비	9,513	7,867	8,113	8,569	8,630	42,692	8,538
— 지방비	2,413	2,489	2,566	2,647	2,730	12,845	2,569

- 주: 1.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
 2. 실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연구용역 별도수행여부 및 과제기간, 난이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액 및 지출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
 3. 위원회의 실제 민간위원 수, 회의개최 횟수 및 부대경비 소요 등에 따라 실제 위원회 설치·운영비는 상이할 수 있음
 4. 안 제17조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이며, 국비는 유사사례의 2024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 76%(인건비), 75.9%(사업운영비), 100%(자산취득비)를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출함
 5.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 (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기본계획)	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에 관한 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.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7조(실태조사)	-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현황 및 실태 파악과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(제1항) -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3	안 제8조(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정책심의위원회)	-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정책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둠(제1항) 1.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.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기본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.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.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-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함(제2항) - 위원회의 조직·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4	안 제9조 (가족돌봄수당)	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에 대하여 가족돌봄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(제1항) -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·기준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재량규정
5	안 제10조 (가족돌봄서비스 지원)	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-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서비스의 종류, 지원대상·기준,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재량규정
6	안 제11조(상담지원)	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, 진로상담,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음(제1항) -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대상·기준,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(제2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7	안 제12조(교육지원)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이 생계와 가족돌봄으로 인하여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(제1항) ○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대상·기준,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(제2항)	의무규정
8	안 제13조 (직업체험 등)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－ 1.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－ 2.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－ 3. 직업소개 및 관리 － 4. 그 밖에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의 직업체험 등에 필요한 사항 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지식·기술을 습득·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(제2항) ○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의 대상·기준,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(제3항)	재량규정
9	안 제14조 (건강관리 지원)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질병의 예방·상담·치료, 영양·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 ○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와 의료비 지원의 기준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(제2항)	재량규정
10	안 제15조(자립지원)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, 법률교육, 문화교육 등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 ○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·기준,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(제2항)	재량규정
11	안 제16조 (주거시설의 지원 등)	○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과 돌봄대상가족이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(제1항) ○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재량규정
12	안 제17조 (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을 위하여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) ○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(제2항) － 1.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 － 2.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·협력 － 3.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－ 4.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－ 5.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- 6.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- 7. 그 밖에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(제3항) 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4항) ○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기준, 종사자의 자격,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5항)	
13	안 제19조 (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전담공무원)	○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) 및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)·군·구(자치구)에 각각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복지 전담공무원(이하 “전담공무원”)을 둘 수 있음(제1항) ○ 전담공무원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 및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함(제2항) ○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)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(제4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제1항(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기본계획)	○	·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2	안 제7조(실태조사)		
3	안 제8조(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정책심의위원회)		
4	안 제17조 (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		
5	안 제9조(가족돌봄수당)	×	·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6	안 제10조(가족돌봄서비스 지원)		신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으나, 현 시점에서 향후 실시할 사업의 확대 규모 등에 대한 추정이 곤란하여 추계 대상에서 제외
7	안 제11조(상담지원)		
8	안 제12조(교육지원)		
9	안 제13조(직업체험 등)		
10	안 제14조(건강관리 지원)		
11	안 제15조(자립지원)		
12	안 제16조(주거시설의 지원 등)		
13	안 제19조(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전담공무원)		

- 안 제6~8조 및 안 제17조를 제외한 재정수반요인에 따라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관련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,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불가능
-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가족돌봄수당, 가족돌봄서비스, 상담·교육·직업체험·자립 등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그러나 제정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고, 현재 제정안에 따른 지원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추정하기 곤란함
 - 또한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사업의 확대 및 추진 규모 등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－ 정부는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관련 사업([표 2] 참조)을 실시하고 있음

[표 2]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관련 주요 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명 (내역사업명)	내용	2024년도 예산
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(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)	· 청년의 심리정서를 지원하기 위하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전국 청년 15,000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	3,591
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(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)	·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돌봄, 식사, 신체건강, 심리지원, 청년 생활 지원 등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 해소 지원	36,175
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	·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청소년 사회안전망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 (해당 사업은 위기청소년 대상 청소년상담1388, 학교 밖 청소년 지원, 내일이룸학교, 위기청소년 특별지원, 이주배경청소년 지원,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위기청소년 대상 상담서비스 외에도 기타 맞춤형 서비스 관련 예산도 포함)	72,073

자료: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명목임금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⁾
 - 명목임금상승률은 인건비 추계 시,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사업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추계 시 적용함
-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

(2024.4. 기준, 단위: %)

	2025	2026	2027	2028	2029
명목임금상승률	3.4	3.2	3.2	3.2	3.2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2.2	2.2	2.1	2.1	2.1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기본계획(안 제6조제1항)

-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, 유사사례인 보건복지부의 “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”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 -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“장애인정책종합계획”을 수립하고 있으며, 이를 위하여 “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” 용역(2022년 예산 9,900만원)을 실시하였음
 - 본 추계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“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” 용역 사례를 준용하되, 2022년 예산 9,900만원이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
 -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법 시행 첫 해인 2025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
- 제정안에 따라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9,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3]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기본계획 수립·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기본계획(안 제6조제1항)	99	-	-	-	-	99	19.8

주: 실제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 별도수행여부 및 과제기간, 난이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액 및 지출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실태조사(안 제7조)

-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비용으로, 보건복지부의 2023년 “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실태조사”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
- 본 추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“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실태조사” 사례를 준용하여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하되(2025년과 2028년 실시), 2023년 예산 2억원이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

□ 제정안에 따라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4]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실태조사(안 제7조)	200	-	-	200	-	400	80

주: 향후 실태조사 시 연구용역 별도수행여부 및 과제기간, 난이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액 및 지출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정책심의위원회(안 제8조)

-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으로, 유사사례인 보건복지부의 “2030 자문단”을 준용하여 추계
 - 제정안은 위원회의 조직,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인 “2030 자문단”의 회의 참석수당 및 연간 회의 개최횟수 등을 준용하여 추계함
 - － 보건복지부의 “2030 자문단”은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과 제언,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청년 자문단으로, 청년복지, 인구정책, 사회복지, 보건의료의 4개 분과별로 전문가 자문, 정책 간담회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
 - 본 추계에서는 위원회에 민간위원이 10명 위촉되는 것으로 하고, 민간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으로 1인당 20만원²⁾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회의를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

2) 기획재정부의 「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에 따르면,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,000원을 지급하되,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,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,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·식비·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일반수용비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

[표 5]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, 명, 회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단가(A)	0.2	0.2	0.2	0.2	0.2	1	0.2
인원 수(B)	10	10	10	10	10	50	10
개최 횟수(C)	4	4	4	4	4	20	4
합 계(A×B×C)	8	8	8	8	8	40	8

주: 위원회의 실제 민간위원 수, 회의개최 횟수 및 부대경비 소요 등에 따라 실제 위원회 설치·운영비는 상이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라.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(안 제17조)

□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17개 시·도에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센터를 신규 설치·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인건비와 사업운영비, 자산취득비이며, 유사사례인 보건복지부의 “자립지원전담기관”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
- 보건복지부는 “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” 사업(2024년 예산 177억 2,100만원)을 통하여 17개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지원하고 있음
- 본 추계는 유사사례인 자립지원전담기관과 동일한 규모로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것으로 가정³⁾
 - － (센터 수 및 배치인력) 신규 설치하는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센터의 수와 배치인력 규모는 유사사례인 자립지원전담기관과 동일한 17개소, 230명(서울 31명, 지방 199명)으로 가정(2024년 기준)
 - － (인건비) 유사사례의 1명당 연간 인건비(2024년 기준 3,924만원)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
 - － (사업운영비) 17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2024년 기준 사업운영비 지원총액(6억 8,300만원)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
 - － (자산취득비) 센터 설치에 따른 신규 배치인력 230명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추계연도 첫 해인 2025년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
3)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유사사례인 현행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매년 약 2,500명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, 제정안에 따른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의 규모에 대한 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본 추계는 유사사례와 동일한 규모로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것으로 가정

- 제정안은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유사사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경우에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임차료 등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, 본 추계에서는 별도의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[표 6] 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센터 신규 설치·운영: 2025~2029년

(단위: 명,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인건비							
인원 수(A)	230	230	230	230	230	1,150	230
1명당 연간 인건비(B)	41	42	43	45	46	216	43
소 계(C=A×B)	9,335	9,634	9,943	10,264	10,593	49,769	9,954
- 국비	7,090	7,318	7,553	7,796	8,046	37,803	7,561
- 지방비	2,244	2,316	2,391	2,468	2,547	11,966	2,393
사업운영비							
사업운영비(D)	698	713	728	744	759	3,643	729
- 국비	530	541	553	564	576	2,764	553
- 지방비	168	172	176	179	183	879	176
자산취득비							
인원 수(E)	230	-	-	-	-	230	46
1인당 자산취득비(F)	6.9	-	-	-	-	6.9	1.4
소 계(G=E×F)	1,586	-	-	-	-	1,586	317
합 계(C+D+G)	11,619	10,348	10,672	11,008	11,352	54,998	11,000
- 국비	9,206	7,859	8,105	8,361	8,622	42,153	8,431
- 지방비	2,413	2,489	2,566	2,647	2,730	12,845	2,569

주: 1. 국비는 유사사례의 2023년 예산 기준 평균 국고보조율 76%(인건비), 75.9%(사업운영비), 100%(자산취득비)를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출

2.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-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였으며, 안 제17조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설치 기관 수, 실제 인력 규모 및 사업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윤경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윤경	02-6788-4742	yoonklee@assembly.go.kr